

울산지방법원 2024. 10. 23 선고 2024나12200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울산지방법원 2024. 10. 23 선고 2024나12200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4. 3. 26 선고 2021가단12999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정석

피고, 항소인 1. A

2.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성욱

변론 종결 2024. 8. 21.

판결 선고 2024. 10. 23.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4. 3. 26. 선고 2021가단129991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1) C와 피고 A 사이에 2021. 4. 2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2) 피고 A은 C에게 울산지방법원 2021. 5. 4. 접수 제268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별지 목록 기재 2, 3. 각 부동산에 관하여 (1) C와 피고 B 사이에 2020. 12.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132,445,97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2) 피고 B은 원고에게 132,445,9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A에 대한 부분과 피고 B에 대한 부분 중 피고 B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각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한 각 주장은 제1심에서 한 주장들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위 각 주장을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의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2면 1행 "변론 전체의 취지" 앞에 "제1심법원의 K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5면 2행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참조), 감정인의 별지 목록 기재 2, 3. 각 부동산에 대한 감정 결과는 감정 대상 시점과 감정평가 시점 사이의 변동 사항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 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점,』

○ 제1심판결 5면 3행부터 4행까지 "피고 A이 위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에도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점"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 A은 위 부동산 매매대금 중 60,000,000원을 위 H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면 위 가압류가 해지된다는 말을 믿고 60,000,000원을 H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내용이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 A이 60,000,000원을 송금한 이후에도 위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점, 별지 목록 기재 2, 3. 각 부동산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피고 B이 C의 잔존 대출채무를 인수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2. 결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이연진

판사하대경

판사전정우

별지